

# 2023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개 요

- ◆ 일시·장소 : 2023. 6. 16.(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 참석 : 10명
  - 위촉 위원(5) : 이영주(위원장), 김원규, 김영희, 임준규, 임혜진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6건

- 보고사항 : 3건(각하 3건)
-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2건)

### 심의결과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6건	3건	2건	1건
보고사항	3건	2건 (각하 2)	1건 (각하 1)	-
의결사항	3건	1건 (기각 1)	1건 (권고 1)	1건 (기각 1)

###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3건(각하 3건)				
23-23 (재상정)	23신청-8	직장 내 성희롱	각하	원안가결
23-24	23신청-11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수정가결
23-25	23신청-14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각하	원안가결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2건)				
23-26	23신청-1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권고	수정가결
23-27	23신청-7	위탁기관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원안가결
23-28	23신청-10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재상정

## □ 보고사항

### ○ [의안 제23-23호(재)] 직장 내 성희롱

- 23신청-8 (각하) 원안가결
- 신청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되기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을 원안 가결하기로 함.
- 다만, 가해자가 민간인인 경우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나 이와는 별개로 민간인인 가해자를 조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되, 기준이 없을 시 규정을 보완하는 게 필요함.

### ○ [의안 제23-24호]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23신청-11 (각하) 수정가결
- 신청인은 재판과정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사건을 신청함.
- 신청의 원인이 된 피신청인의 유출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 하고 피신청인의 유출행위를 일자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함.

○ [의안 제23-25호]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 23신청-14 (각하) 원안가결
- 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당시 시설장인 피신청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아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사건을 신청함.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퇴사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을 원안가결하기로 함.

□ **의결사항**

○ [의안 제23-26호]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23신청-13 (권고) 수정가결
- 권고 의견으로 임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비상임 임원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법정 의무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조직 구성원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비상임 임원은 의무 교육 제외 대상인 점을 고려하였음.
- 피신청인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공지할 필요 있음.
- 할로윈 파티, 신세계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이 발언만으로는 성희롱의 의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다만 위원 1명은 할로윈 파티, 신세계 발언도 성희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어 이 개별 발언을 가지고 이것을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발언을 포함한 피신청인의 시간 순서대로 일련의 행위가 의도를 가지고 점점 수위를 높여가다가 결국 이 사건 URL까지 보낸 행위로 이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결정함. 인정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수정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함.

○ [의안 제23-27호] 위탁기관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23신청-7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은 위탁기관에서 교육생으로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당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달라고 사건을 신청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교육 중 교육을 중단시키고 강제로 신청인을 교육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신청인 2는 면담 과정에서 다른 교육생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신청인은 주장을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원안가결함.

○ [의안 제23-28호]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인권침해

- 23신청-10 (기각) 재상정
- 신청인은 공무원 소수노조 사무처장이고 피신청인은 다수노조 부지부장으로 전화 통화 중 피신청인의 욕설, 소수노조 차별 발언으로 인권침해 피해받았으며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신청함.
- (의견1) 노조 회의나 공개적 자리에서 공식적 질의 발언이었다면 인권침해 사건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전화 통화상 욕설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으로 사인 간의 다툼으로 판단해 제20조 제3항을 근거 규정으로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를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 해야 함.
- (의견2) 소수 노조에서 의견을 이야기 하는데 서로 큰 소리로 말이 오갈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건 인격권 침해로 다룰 수 있고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의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회의에 본 안건을 재상정 하기로 함.